

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수수료 납부일부터 9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신청구분	[] 지역·지구 등 협의	[] 산지전용허가	[] 산지일시사용허가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

산지내역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	
				계	임업용 산 지	공익용 산 지	준보전 산 지

신청목적	
------	--

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지보전협회장 · 한국치산기술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<p>1. 지역등의 지정·결정을 위한 협의</p> <p>가.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·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</p> <p>나.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자·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(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)</p> <p>다.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</p> <p>2.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</p> <p>가. 사업계획서(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의 목적, 사업기간, 전용·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, 입목처리계획,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나. 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</p> <p>다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</p> <p>라.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중·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(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,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)</p>
------	--